

#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(이달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2.

발의자 : 성원환·김명국·이달호·

김선욱·배효임·배철현의원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(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 전부개정)」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회사무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## 3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부칙 제6조

##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회사무과) 의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
2. 문서, 보안,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
4. 의회청사시설,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
5. 의회경비 및 방청, 참관,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
6.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
7.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
8. 의정보도자료 수집,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

9. 각종 회의록 작성, 보관,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
10. 각종 의안의 접수, 인쇄, 배부, 이송 등 처리 종합
11.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
12. 청원, 진정서의 접수, 분류 및 처리
13. 의결문서의 보존, 발간, 이송 등 처리총괄
14.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전문위원)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안, 예산안, 결의안,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
2.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등
3.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
4. 위원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·간담회 등 운영 지원
5.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

제4조(정책지원관)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
6.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